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등 〉
■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82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10
1. 총괄 검토	10
2. 주문별 검토	11
가.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관련	11
나. 정부 조직 설치 요구 등	12
다. 국제·외교적 대응 강화 요구	13
라. 국회 차원의 감시 및 특별위원회 설치	15
※ 참고자료	16

I.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원 등 26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27.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6·25 남침을 비롯한 수많은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사과 의사를 밝힌 발언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사실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특히 억류자 가

족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6·25 남침,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학살, 납북·억류 및 국군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노역, 1968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공비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2015년 DMZ 목함지뢰 공격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사건, 끊이지 않는 핵·미사일 위협, 오물풍선 투하, 무인기 침투,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등 반국가적·반인륜적 범죄 만행을 일삼아온 북한 정권에게 사과할 의사를 밝힌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천안함 46용사, 연평도 순국용사, 납북·억류자 및 피살자 가족을 포함한 북한 만행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통일부 부처현안 보고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자 출신 김원호·고현철·박정호·함진우를 포함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국회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다면 통일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보고되었음에

도 대통령이 "처음 듣는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고의적 외면이자 직무유기이므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루는 통일부 북한인권센터의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재개하고 올 11월 4일 해체한 통일부 '납북자문제대책팀'을 즉각 부활시키고, 일본의 납치문제대책본부를 모델로 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범부처 기구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송환 및 북한인권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며, 동 위원회가 그 활동 내용을 매 분기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탈북 귀환 국군포로 6명(강희열·이대봉·김종수·이선우·고광면·유영복·최기호)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가족을 조속히 면담하여 위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을 직접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2025년 11월 11일 국내 생존 탈북 귀환 국군포로 6명 중 4명(유영복·이선우·김종수·이대봉)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촉구한 ①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및 명부 발간, ② 1994년 조창호(1930~2006) 중위가 귀환해 전역 명령을 받은 11월 26

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 ③ 국군포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공개된 2월 17일을 '북한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 ④ 미국 전쟁포로 훈장(Pisoner of War Medal)처럼 국군포로를 위한 특별 훈장 제정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2017년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 및 6·25전쟁 납북자 명부를 북한 정부에 전달하여 생사확인 및 송환(사망 시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촉구하고, 그 번역본을 유사입장국 정부 및 유관 유엔 기구에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8.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수시로 국회에서 밝혀 오다가 2007년 총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방불명 300명) 확인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 탈북 귀환 국군포로 및 탈북민의 진술에 기초하여 정부가 개별적으로 신원을 파악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 규모를 국회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9.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남북회담 및 유엔, 국제적십자사 등 다자외교를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상회의와 국제회의 등에서 대통령 이하 공무원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아 정부에서 제작한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할 것을 촉구한다.

10.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국 대통령·국무장관·대사가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을 수시로 면담하듯이 우리 국민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피해자 가족과도 정례적 면담을 가질 것을 제안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1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 송환을 위한 모든 외교적·인도적 조치를 취하며, 미국·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자국민 송환에 성공한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진행 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가 참여하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며, 동 특별위원회는 ① 정부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송환 노력 및 대책 이행 점검, ② 피해자 가족 면담 및

의견 청취, ③ 국제사회 협력 방안 모색, ④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⑤ 정부 보고 청취 및 국회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3. 대한민국 국회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의 이행을 감시할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지난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국민 관련 질문에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라고 되묻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음.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했으며, 국제사회에 자국민 보호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라는 메시지를 생중계로 송출하는 망신을 자초했음.

더욱 참담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억류 국민은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에 사과해

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종북몰이가 걱정돼 못 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임. 6·25 납침, 우리 국민과 외국인의 학살, 납북·억류 및 국군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노역, 1968년 김신조 등의 청와대 습격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공비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2015년 DMZ 목함지뢰 공격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사건, 끊이지 않는 핵·미사일 위협, 오물풍선 투하, 무인기 침투,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등 반국가적·반인륜적 범죄 만행을 일삼아온 북한 정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하겠다는 발언은 헌법상 국가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국헌문란적 발상임.

미국은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유나 리(Euna Lee), 로라 링(Laura Ling) 기자의 석방을 교섭하러 방북하여 같이 귀환하였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항에 나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 석방된 미국인 김동철·김상덕·김학송 목사를 맞이했으며, 캐나다는 2017년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의 특사로 대니얼 장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방북해 북한에 억류된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송환시켰고, 일본은 총리가 본부장인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리와 각료가 납치피해자 무사귀환 염원을 담은 ‘블루리본’을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내외 행사에서 상시 착용하는 등 납치문제 해결에 20년 넘게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올 8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다루는 통일부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결정에 이어 올 11월 4일 통일부 '납북자문제대책팀'을 해체했고,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인 12월 4일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억류자 정보 페이지를 일시 삭제하는 '정권 눈치보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았음.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이후로 3국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해왔고, 유엔 총회의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강제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이자 강제적·비자발적 가족 분리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라 확인한 바 있음.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는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도 내로남불, 인권도 내로남불인 이중 잣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임.

북한 억류 국민과 6·25전쟁 이후 8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인도적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을 엄중히 규탄하고,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나경원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기자 회견(2025.12.3.)에서 제기된 우리 국민의 북한 억류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한 발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기구 설치 등 범정부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대북 인권 및 납북자 관련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의 우려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자국민 억류·납치 문제 대응 사례 중 정상·각료의 피해자 가족 면담, 상징 배지 착용, 전담 조직 설치 등 다양한 대응방식이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남북 분단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6·25전쟁납북진상피해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조사 활동과 더불어, 유엔 북한인권 결의 및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져 왔음.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에 납북·억류자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결의안의 문제의식은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남한과 북한의 대치 속에서 자국민 보호뿐 아니라 남북간 평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에 보다 장기적·구조적 인권 및 인도주의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할 것임.

2. 주문별 검토

가.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관련(안 주문 제1호~제3호)

-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에 대한 발언 및 대북 전단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외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과 발언의 구체적 맥락,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의 범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당성이 요구되는 결의안에서 “직무유기” 등의 평가를 명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대통령에 대한 현안 보고에서 통일부가 납북자 등 관련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은 「국회법」에 따른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질의 등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나. 정부 조직 설치 요구 등(안 주문 제4호, 제6호 등)

- 결의안은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기구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송환 및 북한인권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제4호), ‘국군포로 기억의 날’(11월 26일), ‘북한인권 증진의 날’(2월 17일) 기념일 지정 및 국군포로 특별훈장 제정(제6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 국회가 입법부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나, 입법 활동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및 시행은 행정부의 판단에 위임하여 정부 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질 사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이 내각관방 산하에 납치문제대책본부를 두어 납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전담 체계 강화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권한은 정부조직법 체계 및 기존 부처 기능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우선 행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군포로 관련 통계와 관련하여, 정전 직후(1953. 8. 7.)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를 8만 2,318명으로 집계한 바 있으나, 정부는 확인 절차를 거쳐 6·25전쟁 중 미송환 국군포로 추정인원을 1만 9,40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결의안(제8호)에서 정부 보고가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 1.16.)¹⁾으로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군포로 문제 해결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²⁾ 2025년 6월 최초 보고가 있었고 향후 정기적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

- 아울러, 결의안(제5호 및 제6호)에서의 귀환 국군포로의 실명 공개는 본인 및 재북가족의 신변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국제·외교적 대응 강화 요구(안 주문 제7호~제10호)

- 결의안은 남북회담, 유엔 및 적십자 등 정부의 외교활동 의제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제9호), 6·25 납북자 명부의 유엔 제출(제7호), ‘세 송이 물망초’ 배지 착용(제9호), 북미 정상회담 의제화 요청(제10호) 등 외교적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음.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16.]

2) 2025년 6월말 최초 보고된 동 보고서에는 국군포로의 현황*/생활실태/송환/대우 및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귀환포로 진술 등을 토대로 '10년 기준, 약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1년 이후 귀환포로가 없어 생존자 현황 파악은 제한되며, '25년 현재 귀환포로 평균연령(94세) 및 북한 의료수준 등 고려 시 생존자는 극소수로 추정)

- 이는 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의무, 유엔 북한인권결의 78/218호(2023), 79/181호(2024) 및 80/220호(2025)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임.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78/218호(2023)	79/181호(2024)	80/220호(2025)
납북자·포로 송환	모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촉구	강제실종·전쟁포로 미송환 문제 해결 강조	유해를 포함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즉각 송환 촉구
자의적 구금	WGAD의견 인용, 선교사 등 석방 요구	영장없는 체포·연락차단 구금 규탄	영사접근 보장 문제 포함
정치범수용소	폐쇄 및 고문·강제노동 중단 촉구	정치범수용소 존재 명시적 규탄	즉각 폐쇄 및 조건없는 석방 재확인
북송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재확인	강제낙태·영아살해 구체적 비판	강제송환금지원칙 강조, 강제낙태 등 구체적 비판
국제협력	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국제기구 접근 보장 강조	국제기구 방문 허용, 인도적 접근 보장 요구

- 다만, 남북대화의 단절 및 북미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협상 방식이나 외교 전술까지 결의안에서 특정하는 것은 대북·대미·다자외교에서 정부의 전략적 선택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등 기존 외교 성과와 연계된 정책 방향을 촉구하되 구체적인 협상 전략은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라. 국회 차원의 감시 및 특별위원회 설치(안 주문 제12호 등)

□ 결의안은 국회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보고 청취, 피해자가족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 지속적 감시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될 경우에는 대북 인권,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 권한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정부로부터 정기적 보고를 청취하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봄.

□ 참고로, 역대 국회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 촉구 관련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세 차례(2000년 12월, 2008년 12월, 2013년 6월) 의결된 바 있으나, 억류자 관련 결의안은 2018년 5월 처음 제기된 이후 제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음.³⁾

3) 2000년 이후 국군포로 등 송환 촉구 관련 결의안 등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 2000년 이후, 국군포로 등 송환 촉구 관련 결의안 현황 >

(2026. 2. 15. 기준)

대별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	의결일	논의결과
16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강삼재의원 외 132인	2000.10.12.	2000.12.8.	수정가결
18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	박선영의원 등 14인	2008.10.22.	2009.12.7.	수정가결
	국군포로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회창의원 등 16인	2010.10.5.	2012.5.29.	임기만료 폐기
19대	국군포로송환 촉구 결의안	김진태의원 등 17인	2013.5.15.	2013.6.25.	수정가결
20대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연주의원 등 10인	2018.5.18.	2020.5.29.	임기만료 폐기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김재경의원 등 15인	2019.4.18.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2019.5.16.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이주영의원 등 16인	2019.11.29.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VS-11기 납치 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정병국의원 등 18인	2019.11.29.		
21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의원 등 39인	2020.9.29.	2024.5.29.	임기만료 폐기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승조원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20.11.11.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2020.11.19.		
22대	10여 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2025.3.26.	-	외통위 심사중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2025.4.15.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채구성